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//

제출년월일 : '95. . .
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1. 개정이유
   ㅇ 도의회 의장전용 차량 및 소방차량 신규구입에 따라 운영 요원 확보로 새로운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,
   ㅇ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

2. 주요골자
   ▷ 정원 : 40명 증원
   ㅇ 도의회사무처 — 1명(기능10등급(운전) 1)
   . 의장전용차량운전원 : 1명
   ㅇ 직속기관(소방관서) — 39명(위2, 장2, 교15, 사20)
   . 청주소방서 : 6대(대형펌프1, 구조1, 구급4), 18명
   . 충주소방서 : 1대(대형펌프1), 4명
   . 제천소방서 : 1대(구급1), 2명
   . 영동소방서 : 2대(승용1, 진단1), 2명
   . 증평소방서 : 6대(지휘1, 화물1, 승용1, 조명1, 구조1, 구급1), 13명

3. 관계법령
   ㅇ 지방자치법
   ㅇ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

덧붙임 1. 조례안 1부.
2. 신구조문대비표 1부.
3. 관계법령 1부. 끝.

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

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중 의회사무처 "57명"을 "58명"으로, 직속기관 "910명"을 "949명"으로 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 (다른조례의 개정) 충청북도의회사무처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4조중 "57명"을 "58명"으로 한다.